

중재위원, 신청인, 언론사가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

01-1 40풍상의 언론중재위, 뜸직한 희망이다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前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



몸은 날씬하다기보다 약간 야윈 편이고 얼굴은 부유해 보인다고보다 조금 피곤한듯한 인상이다. 내가 그저 데면데면 알고 지내던 지인을 대충 스케치하면 그렇다. 별다른 현안이 없으면 일년에 한 두번 연락이 고작인 그에게서 어느 날 뜬금없는 전화가 왔다. 첫마디가 벌써 씩씩거린다. 마치 어제 저녁에 흐지부지 했던 말싸움을 지금이라도 당장 마무리하자는 듯이 열이 받은 모양새다. 사업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잠시 틈을 내어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단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 방송사의 뉴스에 자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 자랑하려고 지금 전화한거냐?”라고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더니 “아냐, 아냐, 그렇게 아니라니까요!”라고 펄쩍 뛴다. 듣고 보니 정말 어이없는 하소연이었다. 남대문 시장을 하릴없이 기웃거리며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샀단다. 그런데 그날 뉴스에 검정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쳐진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흔들흔들 다니는 자신의 남루한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방송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바지 차림으로 말이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기가 불통이 났다고 했다. “왜 망했어?” “얼마 전에 만났을 땐 사업이 괜찮았잖아? 그럼 지금 실업자야? 먹고 살만은 해?” 이런 격려와 염려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했다. “아니 무슨 뉴스데?” “그게 요즘 실업자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였던가 봐요” 아하! 순간 펄떡 지나가는 생각에 내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라는 걸 알고 조언을 구하는 모양이구나! 그에게 중재위원으로서의 내 경험을 살려 언론조정이나 중재를 받고 싶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청구하라고 알려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통상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이고 변호사, 언론학 교수,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니 언론중재위원회 상담부서에 가서 조정신청서 작성 등을 도움 받으라고 알려줬다.

1981년 3월 31일에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 40주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태동 시기였으나 정치 경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여전히 권위적이었다. 언론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기사화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도 ‘사이비 기자 일제단속, xx일보 지방기자 9명 구속’같은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무력한 개인이 언론사나 기자에게 맞서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봐도 실업자 행색을 한 자신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방송을 타면 화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걸리 한잔 걸치고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면서 온갖 설움을 묵묵히 속으로만 삭힐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사라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천연기념물 감이라 할 터이다.

어쨌든 자신의 사적 권리, 명예, 사생활, 초상권 등을 포함하는 인격권 등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여지없이 대응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정황은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출범한 1981년의 청구 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9년 121건으로 최초 100건을 넘어선 이후, 1994년 54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에는 883건, 동 법률이 개정·시행된 2009년에는 1,573건, 2015년에는 3,319건(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량 청구 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2020년에는 3,92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이처럼 언론 분쟁이 폭증한 주요 배경은 우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의 70% 이상이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앞서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덜 민감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디지털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될수록 갈등은 증폭되고 첨예하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남지만, 지난 40년간 언론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크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분쟁해결에 있어서 언론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언론사나 기자의 자정 노력이나 언론의 자율규제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자율규제기구인 1957년 전국의 일간신문과 통신사의 편집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였으나 상징적 윤리강령만 있었을 뿐 실질적 통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또한 1961년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진정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만, 해가 갈수록 제소 건수가 줄어들다가 1978년 이후에는 마참가지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언론인은 피해자의 불만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쉽게, 또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기자나 언론사 데스크에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떠나 당사자인 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담당 기자나 데스크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연락해 보라'는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답변만 들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인 이상 더욱 강경해질 수 밖에 없을 터이다. 물론 수많은 이슈에 긴박하고 바쁜 언론 현장인 것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할 여유를 보도 활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중요하다. 그것은 언론 소비자의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돌아보면, 남대문 시장에서 촬영된 지인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 떠오르는 대안이다. 고의는 아닐지라도 언론보도에 과실이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 또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반론보도청구 대상이 아닐뿐더러 '남대문 시장에서 촬영된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없는 사업가이다'라고 반론보도를 해봤자 사람들은 뜬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은 무작위 추적을 통해 각 중재부에 배당되지만, 만약 내가 소속된

중재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떤 중재나 조정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고민해본다. 나는 언론사에 자신의 자료화면 송출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선 유감을 표하라고 할 터이다. 그리고 재방송이나 다시보기에서 해당 자료화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선에서 조정을 권유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친구를 아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식별할 정도로 영상이 또렷하게 찍혔고, 또 그를 모르는 어느 누가 봐도 정말 하릴없는 실업자처럼 찍혔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은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니 그와 같은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담당 방송사 기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보라고 권유했다. 결론만 말하자면, 다행히도 해당 방송사에서 자신들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되었단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한다면 사회 각 층위에서 조정과 중재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셈이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굳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청구 건수와 같은 객관적 통계수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황은 쉽사리 느껴진다. 신문이나 방송을 슬쩍 결눈질만 해도 여기저기서 명예훼손, 가짜뉴스에 관한 기사가 만발한다. 또한 특정인의 과거사 폭로도 빈발하고 사실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속칭 '내로남불'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기술 발달과 개인의 권리 신장에 따른 분쟁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기술 발달과 개인의 권리 신장이라는 미래 비전이 분쟁을 유발하는 나쁜 트랙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평론가는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메커니즘이 복잡해지면서 상호 간에 이익갈등이 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문적 객관성과 정교성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하버드대학교의 퍼트남 교수는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신용, 신뢰, 사회적 관계의 수평화 및 참여의 확대 등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위축되고 감소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그 사회는 정체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로가 신뢰할수록 분쟁 거리도 대화로 풀리고, 신용이 높은 사회일수록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성숙되어야 한다.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이익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법 제1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개인이나 개체의 권리도 중요하다. 또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속한 사회적 공익도 중요한 법이다. 개인이든, 언론사든, 여타 정부기관이든 자신의 권리 혹은 권한만 중요하다고 고집하면 분쟁이 생긴다. 자신의 특권은 로맨스고 약자가 누리는 사소한 권리는 불륜이라 내치면 그 사회는 악다구니 사회가 된다. 서로 간의 신뢰와 신용, 그리고 공정한 규범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사회적 자본이 탄탄한 사회일수록 갈등 당사자 간에 효율적인 중재와 조정이 작동한다. 언론조정중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상사중재, 가정사중재, 국제심판중재까지 여러 층의 중재와 조정이 있다. 중재를 영어로 말하면 arbitration이다. 이 말은 arbiter를 어원으로 하는데 동일한 어원을 가진 말이 arbitrary, 즉 '자의적인, 제멋대로'라는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내로남불이란 뜻이다. 즉 중재와 자의적인 판단은 서로 다른 한 범주인 셈이다. 크게는 언론에서부터 작게는 개인들의 잡다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arbitration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arbitration의 명분으로 arbitrary한 사회가 된다면 그 결말은 상상하기도 싫다. 사회적 규범이 바로 서고, 그 토대 위에 올바른 중재와 조정이 서로 간에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사회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원한다.

40년의 세월을 인생으로 환산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경험과 지력이 조화를 이루는 중년기에 해당한다. 중년기에 접어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을 비롯한 공적 책임을 언론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고도의 성숙성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촉매가 되길 바랄 뿐이다. 🍷